

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50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례내용 정리와 조례내용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
(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→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)

관련법규

- 관광진흥법 제35조

첨 부

-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- 관련법규 발췌 1부

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 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 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”을 “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.....</p>

관 계 법 령 발 취

[관광진흥법]

第35條第1項(課徵金の賦課)①관할 登錄機關등의長은 觀光事業者가 第33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利用者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萬원이하의 課徵金を 賦課할 수 있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を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·정도등에 따른 課徵金の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③관할 登錄機關등의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を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